

2024년도 제6회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

2024년도 제6회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4일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

I 최종합격자

연 번	채용분야	응시번호	성 명
1	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	240-603	조 * 승

II 채용후보자 등록

- 대 상 : 2024년도 제6회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명
- 기 간 : 2024. 10. 25.(금) ~ 10. 29.(화), 09:00 ~ 18:00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
- 장 소 :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(본청) 3층 총무팀 (☎051-461-3092,3096)
※ 주소 : (48940)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-1
- 등록방법 : 아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방문 등록

○ 제출서류

- 신분증 소지
- 기본증명서(상세,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(법원 발행)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
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명서류 제출 요함
※ 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검진서로 대체 가능
- 사진 [반명함판(3cm×4cm)]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최종학력(재학·휴학·제적) 증명서 1부
※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도 가능
- 통장 사본 1부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(첨부양식)
- 공정채용확인서 1부(첨부양식)

○ 유의사항

-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시행 2024년 제6회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>

- 피 성년 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4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

공정채용 확인서

(용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

성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인사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소속기관 :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명 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
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인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
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